

[일련번호 : 4]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수당 지급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강사수당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제21조」 제1항 제19호가목에 따라 ‘고용에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가 받은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86조, 제103조의13에 의하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강사수당 등 지급액이 건별 12만 5천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8.8%(지방소득세 0.8% 포함)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2024년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참여예산사업 “**** ** ****” 사업 및 제35기 양천장수문화대학 “***** *****”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강사 3명에게 강사수당 지급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타소득세 등 224,400원을 징수하지 않고 강사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강사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연번	건명	일자	강사명	강사료 지급액(원)	원천징수 (여/부)	미징수원천징수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고
1	2024년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참여 예산사업 “**** ** ****”강사료	6.8.		240,000	부	21,120	
2		6.8.		240,000	부	21,120	
3		6.15.		240,000	부	21,120	
4		6.15.		240,000	부	21,120	
5		6.22.		240,000	부	21,120	
6		6.22.		240,000	부	21,120	
7		10.19.		240,000	부	21,120	
8		10.26.		240,000	부	21,120	
9		11.2.		240,000	부	21,120	
10		11.9.		240,000	부	21,120	
11	제35기양천 장수문화대학 강사료(5/29)	5.29.		150,000	부	13,200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